

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0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03. 23. 이쌍자 의원 등 7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4. 03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4. 12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학술용역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학술용역 결과물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학술용역의 종합적·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나.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다. 학술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라. 착수·중간·최종 보고회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마. 학술용역 진행상황, 결과 평가,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4조)
바. 학술용역 결과의 의회 보고,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6조)
사. 학술용역 전 과정에 대한 성과점검 및 학술용역성과물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~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9호
- 예고기간: 2023. 3. 27.(월) ~ 2023. 4. 3.(월) [7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가. 조례 제정의 취지(필요성)

- 고성군이 발주하는 학술용역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과제 선정과 과업 수행, 성과물 평가·활용·공개에 이르기까지의 용역 추진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학술용역과제의 선정(안 제4조)
 - 예산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군의 중·장기 발전과 조화로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 선정 시의 유의 사항을 규정함.
-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)
 - 위원회를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용역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 등의 심의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- 학술용역실명제(안 제9조)
 - 학술용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용역 추진 공무원을 실명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함.
- 보고회 운영의 내실화(안 제10조)
 - 보고회 생략 및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회 개최를 규정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군의회 의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함.
- 학술용역진행 상황의 보고 및 점검(안 제11조)
 -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주관부서가 연구 기간 동안 목적과 일정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함.
- 의회 보고,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(안 제15조, 제16조)
 - 결과 활용, 예산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,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 다른 지자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
- 성과점검, 학술용역성과물 관리(안 제17조, 제18조)
 - 용역 성과를 점검하여 부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용역성과물의 보관 관리를 통해 시책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함.
-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 제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(처리) 요구사항인 연구용역 유사·중복 발주 지양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써, 용역 발주 전 사전 심의를 통해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건전 재정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제2항에서 정책 연구결과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4. 12. 원안가결 함.